

「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근한 의원 외 16명

2. 제안이유

- 우리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상호 상생관계를 유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1사1경로당 정의 규정(제2조제7호)
-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신설(제15조의2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부서검토: 노인장애인과 의견제출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노인과 지역사회 간 상호 상생관계를 맺음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를 제공하여 우리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과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1사1경로당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사회와 경로당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사업 추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체가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1사1경로당 추진 시 기업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경로당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.